

제 885 호

1982. 1.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박 영 수

편집 : 공 보 관 이 총 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1500 호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256 호 (시교육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 위임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20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및지적승인 6
제 21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7
제 22 호 :	도시계획시설 (철도) 지적승인 8
제 23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8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9
제 25 호 :	건축선포지승인 10

<이면계속>

1. 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0
제 2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1
제 28 호 :	도시계획사업 (배수지) 시행허가	11
제 48 호 (구로구) :	구로구광고물제획정비지구지정고시	12

◎ 공 고

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13
제 27 호 :	KS 표시 정지 처분해제공고	13
제 28 호 :	마포로제 1 구역 제 10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물위 한 공람공고	14
제 2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30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7
제 31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9
제 32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9
제 33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19
제 2 호 (동작구) :	동장적인개각공고	20
제 9 호 (성북구) :	공인신조공고	21
제 4 호 (강서구) :	공인개각공고	25
제 3 호 (강남구) :	공인개각사용공고	26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서울특별시조례 제 1600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제 2 함"을 "제 3 함"으로 하고 제 2 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내에 부녀대를 설치한다.

제 3 조중 "제 2 함"을 "제 3 함"으로 하고 제 2 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녀대의 명칭은 ○○소방서의

용소방대 부녀대 (이하 "부녀대"라 한다)라 한다.

제 6 조중 제 2 함 및 제 3 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녀대에는 부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지대에는 지대장 1명과 일반대원을 둔다.

제 7 조중 "제 3 함"을 "제 4 함"으로 하고 "제 3 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녀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부녀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8 조 제 1 함중 "대토는 지대에는"을 "대에는"으로 하고 "소방반, 구호반"을 "소화반, 구조반"으로 하며 "제 2 함"을 "제 3 함"으로 "제 3 함"을 "제 4 함"으로 하고 제 2 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녀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 홍보부에는 서무반, 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호반을 두며, 부 반별업무 분장은 별표 2의 1 과 같다.

제 9 조중 "대별의 정원은 50 명으로 하며 지대를 설치한 경우에 지대별 인원은 20 명내외로 한다."를 "대별의 정원 50 명으로 하고 부녀대의 정원은 50 명내외로 한다."

며 지대를 설치한 경우에 지대별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	제1항의 수당은 1인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50 퍼센트(단 매월미만은 절사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대장, 부대장및 지대장"을 "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및 지대장"으로 한다.	별표2중 "소방반"을 "소방반"으로, "구조반"을 "구조반"으로 하고 별표2의1및 별표3의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가(2)중 "부대장및 지대장의것"을 "부대장, 부녀대장및 지대장의것"으로 한다.
5. 대원이 대통령선거법및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후보자가 된	부 칙
제16조 제1항중 "별표3"을 "별표3및 별표3의1"로 하고 제2항중 "대여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1)

부녀대의 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홍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및 소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 구역내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및 의소대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조부	구조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활동 2. 이재민 위안 활동

(별표 3의 1)

부제 (부녀대원)

구 분			부장급이상	반장이하	도형
표	제	지질	금색금속지	금색금속지	
		제식	1. 대장의 것. 1번 1.7센치미터 의 능형속에 "소" 자 4개를 설치한것. 3개를 0.2센치미 터 간격으로 한줄로 배열한다. 2. 부장의 것. 위와 같은것 2개 로 한다.	1. 반장의 것 대장의 것과 같은 것 1개로 한다. 2. 대원의 것 없음.	의소대표 지장과 동 일
소	작	지질	국방색면직지 또는 면 화학섬유 혼방지	부장급이상과 같다.	.
		제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 로 한다.	.	.
모	약	지질및 제식	의용소방대원 약장과 같이 한다.	.	.
제	장	지질및 제식	여자소방관 제복과 같이 한다.	.	.

규 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구 본 석 인

◎ 교육규칙 제 256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중 "임원"을 "이사장"으로 하고 제 8 호 및 제 9 호를 삭제하고, 제 10 호중 "(3천만원이하)"를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한다.

제 5 조 제 3 항 제 5 호중 "임대허가(500만원미만)"을 "임대허가와 매도, 증여, 교환, 담보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으로 하고, 제 6 호를 삭제하고, 제 10 호내지 제 1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교법인(유지경영학교 포함)의 장기차입 승인

1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및 담보허가(5천만원 미만)

12. 학교법인 임원취·해임승인(이사장 제외)

제 7 조 제 1 호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9 호중 "관내전보"를 "관내전보(교육구청 제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1.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 임용

2. 제 1 호 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원장, 원감포함)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3. 제 1 호 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원장, 원감포함)의 휴직 및 복직

4. 제 1 호 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원장, 원감포함)의 호봉재산정

및 "정기승급"

제 7 조 제 18 호 제 19 및 제 53 호를 삭제하고 제 5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제 1 호의 각급 학교 및 교육구청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설정

제 8 조 제 12 호중 "교사"를 "교직원"으로 하고

제 9 조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부를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보직부여

부 칙 (82. 1. 20)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81.12.31)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19.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수 도	구로구 독산동 산 10 일대	28,900	
"	"	강남구 방배동 산 96 일대	31,200	
"	"	강남구 서초동 산 161 일대	10,000	
"	"	강남구 양재동 산 30 일대	14,600	
"	"	은평구 진관 4동 358 의 3 부근	330	
"	"	은평구 신사동 241 의 20 부근	314	
"	"	관악구 봉천동 495 의 13 부근	635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2조 규정과 건설부 고
시 제 521 호 (81.12.31)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경
비과 및 시민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1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구분	시설명	시장명칭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신설	소매시장	삼거리시장	강서구 목동 375-5 일대	1,554 ㎡	
"	"	신정종합시장	강서구 신정동 296-69	2,159 ㎡	
"	"	마장시장	성동구 마장동 480-5	1,861 ㎡	
"	"	산도림시장	영등포구 대림동 909-2 일대	5,504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

도시계획시설 (철도)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0 호 (82.1.9) 로 결정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철도)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장 도시정비과 및 시민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19

서울특별시 장

- 도시계획시설 (철도) 지적승인조서
철도 (본선)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m)	시점	종점
신설	경원선	7,500	월계동 256-1	도봉동 368-3

- 철도 (부대시설)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m)	위치	비고
신설	월계정차장	4,429	월계동 261-3 일대	
"	창동 "	83,527	창동 135-1 "	
"	방학 "	4,628	방학동 "	
"	도봉 "	3,300	도봉동 99-159 "	
"	누원 "	11,908	" 368-3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 제 445 호 (81.12.12) 로 결정고시된 당시 판내도

계획시설 (광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19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광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노량진역광장	노량진역 앞일대	3,700	
"	신촌역 "	신촌역 "	5,900	
"	남가좌역 "	남가좌역 "	2,450	
"	휘경역 "	휘경역 "	1,800	
"	이문역 "	이문역 "	1,90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76 호 (81. 12. 16) 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 중구청 및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의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2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중구 장충동 1가 116-2 (장충체육관) - 신당동 - 성동구 금호동 - 성수동 옥수동 78-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금호대로 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폭 30미터 - 50미터, 연장 2,860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2.1.21 - 84.12.31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조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건축선 폐지승인

1.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 27 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건축법 제 30 조 제 2 단 및 건축법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폐지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서울특별시 장

가. 건축선 폐지승인조서

- 1) 위치: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3-4 지상내의 지정제 건축선
- 2)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시 고시 제 460 호 (78. 9. 8)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동 고시 제 528 호 (78. 10.

16)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 12. 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22.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자양동 695 번지의 3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면서국민학교
3. 사업의 규모: 면적: 13,418.5㎡ (4,059 평) 시설: 4층연건평 4,495.5㎡ (1,360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1982. 1. 나. 준공: 1983. 12.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7.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제 59 호 (81.3.5) 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동고시제 105 호 (81.4.6)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배수지)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의 규정 제 외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1.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용남동 29 번지의 1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상봉국민 학교
3. 사업의 규모 : 면적 4,360.2㎡ (1,470 평)
시설 : 4 층연건평
3,339㎡ (1,010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 1982.1
나. 준공 : 1983.12.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실제노면 : 성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도시계획사업(배수지)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81.5.4) 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방배등산 84 번지 12 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 (82.1.5) 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시행령 25 조와 건설부 고시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사항의 내부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수도공사와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1.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남구방배등산 84 번지 12 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배수지)시행
3. 사업의 규모 (면적) : 배수지 300 톤 (400 평)

24-12 제 885호 시

보 1982.1.20

4.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		준공예정일 : 1982. 6. 3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1982. 1. 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강남구방배동산 84번지 12	일 야	400㎡	서대문구연희동 1번지 56호 최 장 식
7.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연희동 1번지 56호 최 장 식		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한다. 2.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때 까지 신규제시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3.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 구로구청고시제 48 호 구로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1981. 11. 21 구 로 구 청 장	
○ 계획정비지구			
구 간		연 장	비 교
(독산동 284번지 4호) (독산동 281번지 2호)		3,500 미터	도로가 전면 건물부분
(시흥동산 31번지 1호) (시흥동산 29번지 1호)			
에서부터		까지이르는도로양변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26 호

도시계획사업토지보상실시계획
인가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25호(72.11.10)로 지적고시된 구로구개봉동 92번지 51호부터 고척동 189번지 1호 남부순환도로-강서로 구간내의 저촉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

1982. 1. 19

서울특별시장

공 람 개 요

1. 사업의 위치 : 구로구개봉동 92의 51 - 고척동 160의 1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부순환도로-강서로간토지보상

3. 사업의 규모 : B=20m L=830m 토지 5.025평중 금회보상 약 2,980평 (대산범위내)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준함. (상세한 것은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문의)

6. 보상시기 : 도시계획 사업보상실시계획인가 공고일로부터 1982.2.30까지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서울특별시 공고제 27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 처분한바있는 가래 사항에 대하여 등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제 21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

1982. 1.

서울특별시장

26-14 제 885 호 시

보 1982.1.20

허가번호 : 제 2223 호

허가일자 : 80.10.13

제조업체명 : 용원산업

대표자 : 임 실 군

소재지 : 서울영등포구양평동 2가 9

규격번호 : K·S 4505

품 명 : 도어클로우저

종류및등급 : 평행형 2호

처분일자 : 81. 10. 17

해제일자 : 82. 1. 16

㉞ 서울특별시 공고제 28 호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4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146 호 (80.5.19) 및 서울시
고시 제 11 호 (82.1.8) 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에 관
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한다.

1982. 1. 2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칭 :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마포구도화동 16-17 외
31 필지

다. 시행면적 : 3,667.6 ㎡

라. 대지면적 : 3,277 ㎡

마. 공공용지부담면적 : 390.6 ㎡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용도는 건축
허가로서 확정함)

○ 건축면적 : 1,475 ㎡

○ 연 면 적 : 22,130 ㎡

○ 건 폐 율 : 45 %

○ 용 적 율 : 445 %

○ 주 용 도 :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 층 수 : 지상 15 층, 지하 3 층

사. 시행자 : 마포로제 1 구역제 10 지구
재개발조합

아. 시행기간 : 1982. 2 — 1983.
12

자. 공람기간 : 1982. 1. 20 — 1982.
2. 15 (30 일간)

차.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재개발과
(720-4627)

2) 서울특별시 마포구도화동 16-
42번지

◎서울특별시공고제 29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

1. 서울시고시 제 3 호 (69.1.18)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동구로
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
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
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
고 함.
2. 관제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전
산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
물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것기
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

1982.1.21

서울특별시 강

공 랑 개 요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구로동 136 의
7-118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구로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도로개설 : $B = 8 m$ $L = 340 m$
나. 하 수 도 : $D = 600 mm$ $L = 319 m$
4.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일 - 82.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실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구로동 136-14	대	1,974㎡	297	도 로	이 소 지	영등포동 2가 165
2	" 136-5	"	132	1	대	노 음 전	구로동 136-5
3	" 136-4	"	93	3	"	이 용 격	" 139-204
4	" 131-25	"	89	4	"	황 흥 연	" 131-25
5	" 131-21	잡	99	73	"	김 청 자	" 131-19
6	" 131-16	대	112	2	"	최 용 석	" 131-16
7	" 131-15	"	89	66	"	서 천 만	니혼고꾸오오사까 후지이제라시고산즈 메 2 번지 21 호

26-16 제 885 호

시

보 1982.1.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8	구로동 131-20	대	60 m	5 m	도 로	정 지 백	구로동 419
9	" 131-13	"	112	56	대	김 정 웅	" 131-13
10	" 131-17	"	76	2	"	김 기 봉	" 131-17
11	" 131-9	"	76	63	"	이 병 구	" 131-9
12	" 131-29	잡	33	33	"	김 흥 기	웅봉동 53-5
13	" 130-56	"	33	"	"	안 욱 환	구로동 130-56
14	" 130-58	대	99	28	"	박 용 순	" 776-2
15	" 130-47	잡	132	70	"	이 명 원	웅암동 593-6
16	" 130-82	"	93	93	잡	박 상 우	구로동 413-72
17	" 130-57	"	66	1	"	박 용 순	" 776-2
18	" 130-34	"	83	5	"	노 승 녀	" 130-34
19	" 130-39	"	132	96	"	유 영 호	구로동 130-39
20	" 130-17	"	195	18	도 로	이 남 권	미아동 산 75
21	" 130-33	"	139	107	잡	김 정 욱	구로동 313-114
22	" 130-32	대	112	27	"	채 삼 석	" 142-19
23	" 130-78	"	116	14	대	박 노 함	" 130-78
24	" 130-76	"	116	88	"	양 정 정	영등포동 2가 158
25	" 129-114	도 로	142	142	도 로	정 영 기	경산군 남산면 경동 ⁶³⁰
						조 정 만	종로구 관수동 59
26	" 129-73	대	79	26	대	길 천 익	구로동 129-73
27	" 129-83	"	13	2	도 로	김 기 만	구로동 730-7
28	" 129-45	"	99	3	대	김 창 섭	" 129-45
29	" 129-37	"	126	22	도 로	오 재 호	원효로 3가 187
30	" 129-2	"	211	57	대	전 균 철	구로동 129-2
31	" 116-29	"	202	66	"	이 승 용	천호동 423-129
32	" 116-5	도 로	284	14	도 로	손 창 순	구로동 126
33	" 116-15	대	122	60	대	김 재 익	" 115-18
34	" 116-14	"	136	55	"	최 성 남	" 129-74
35	" 122-15	도 로	46	46	도 로	타 기 학	명동 2가 107

제 865 호

시

보 1982.1.20

26-17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시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6	구로동 117-9	도로	235	235	도로	강 낙 균	간이주택 234 호
37	" 119-2	담	235	235	잡	이 해 영	고척동 256-17
38	" 119-6	"	13	13	"	조 창 환	신당동 291-24
						조 성 삼	북구간석동 119-3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건물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구로동 131-9	주택	연 와 조 세멘트와집	18 평	주 택	이 재 운	구로동 131-9

○서울특별시공고제 30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63 호 (81.7.11) 호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된 구로구개봉동 417-144 간의 개봉 전철역 주변 하수도 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기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
2. 판제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

1982.1.21.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위치 : 구로구개봉동 353의 12-181의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개봉전철역 주변 하수도 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하수도시설 : 박스 3.5 m × 2.5 m × 3천 L=30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 - 8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첨부 토지 및 건물조서 1부

26-18 제 885 호 시

보 1982.1.20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면적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개봉동 353-33	대	1,034.9	115	대	임 효 철	개봉동 353-12
2	" 353-34	"	432.4	39	"	대한주택공사	영등포동 5가 10
3	" 174-7	"	66	24	"	노 순 금	개봉동 174-7
4	" 173-1	"	417	70	"	전 용 원	" 173-1
5	" 174-5	답	102	48	도로	대한상석강업(주)	영등 1가 10
6	" 174-9	도로	60	30	"	이 승 선	개봉동 204-2 삼보아파트 3동 104 호
7	" 174-1	대	244	244	대	"	"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건물화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개봉동 353-33	주택 및 점 포	세멘트벽조 스래트집	32 평	점포 및 공 장	임 효 철	여의도동 1-175 은하아파트 0동 302
2	" 173-1	점 포	연 와 조 평 육 개	2 평	점 포	전 용 원	개봉동 173-1
3	" 174-6	주 택	연 와 조 평 육 개	1층 1평 2층 1평	주 택	"	"
4	" 174-4	여관 및 점 포	세멘트벽돌 스라브	1층 37평 2층 37평 옥탄 3.10평 지하 2.80평	여관 및 점 포	이 승 선	개봉동 403-24

○서울특별시공고제 31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을 승인하고 이를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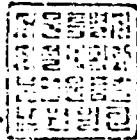
1982.1.22

서울특별시장

1. 공 인 명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
과 분임물품출납원의인
2. 사용개시일자 : 82.1.25
3. 공인의인명 : 별첨

인

영



공 인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분임물품출납원의인

○서울특별시공고제 32 호

공인신조사용및 폐기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및 폐기함을 승인하고 이
를 공고한다.

198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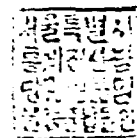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서울특별시 통계전산당
당관실 분임물품출납원의인 (신조)
○전산담당관 분임물품출
납원의인 (폐기)
2. 사용개시일자 : 82.1.25
(폐기일자) : 82.1.25
3. 공인의인명 : 별첨

인

영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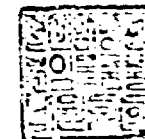
공 인 명

서울특별시통계전산당
관실분임물품출납원의인

인

영

(폐기)



공 인 명

전산담당관분임물품출납
원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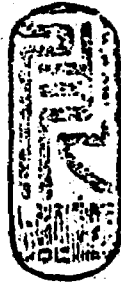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공고제 3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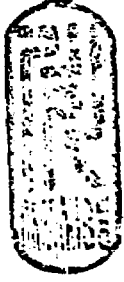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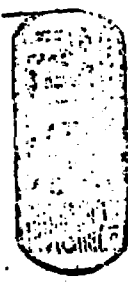
공인신조사용및 폐기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및 폐기함을 승인하고 이
를 공고한다.

198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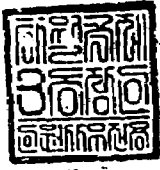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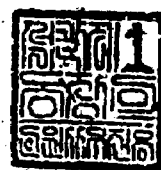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 ○서울특별시 상공과 분입물품출납원 (신조) ○상정과 분입물품출납원 인 (폐기) 2. 사용개시일자 : 82.1.25 (폐기일자) : 82.1.25 3. 공인의인명 : 별첨		서울특별시 증인조례 제 6조에 의하 여 개각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82.1. 동 작 구 청 장 1. 사용일자 : 1982.2.1.09:00 2. 직인의인명명 : 1) 노량진제 1동장 직인 및 제인 2) 노량진제 2동장 3) 사당제 1동장 4) 사당제 3동장 5) 신대방제 2동장 3. 직인의인명 : 별첨	
인 명	(신조) 	인 명	 
공인명	서울특별시 상공과분입물품 출납원인	공인명	노량진제 1 동장의직인및제인
인 명	(폐기) 	인 명	 
공인명	상정과분입물품출납원인	공인명	노량진제 2 동장의직인및제인
○동작구공고제 2 호 동작직인개각공고 동작구 동장과 직인 및 개인이 마멸되어 관인 규정 제 8 조 및			

인 영	 	○성북구공고제 9 호 공인신조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외거 다음과 같이 민원사무용 동장직인을 조각하였기 동조례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함. 1982.1. 성 북 구 청 장 1. 조각사용년월일 . 1982.2.1.09:00 2. 조각된직인 : 신북 1 동, 성북 2 동, 동소문동, 삼선 1 동, 삼선 2 동, 동선 1 동, 동선 2 동, 돈암 1 동, 돈암 2 동, 안암동, 보문동, 정능 1 동, 정능 2 동, 정능 3 동, 정능 4 동, 길음 1 동, 길음 2 동, 길음 3 동, 종암 1 동, 종암 2 동, 하월곡 1 동, 하월곡 2 동, 하월곡 3 동, 하월곡 4 동, 상월곡동, 장위 1 동, 장위 2 동, 장위 3 동, 석판 1 동, 석판 2 동 3. 공인조각인영 : 별 첨
공인명	사당계 1 동장의직인및제인	
인 영	 	
공인명	사당계 3 동장의직인및제인	
인 영	 	
공인명	신대방계 2 동장의직인및제인	

민원사무건용동장지인인영

인 영				
공인명	성복제 1 동	성복제 2 동	동소문동	삼선제 1 동
인 영				
공인명	삼선제 2 동	동선제 1 동	동선제 2 동	돈암제 1 동
인 영				
공인명	돈암제 2 동	안암동	보문동	정능제 1 동
인 영				
공인명	정능제 2 동	정능제 3 동	정능제 4 동	길음제 1 동

인 영				
공인명	길음제 2 동	길음제 3 동	종암제 1 동	종암제 2 동
인 영				
공인명	하월곡제 1 동	하월곡제 2 동	하월곡제 3 동	하월곡제 4 동
인 영				
공인명	상월곡동	장위제 1 동	장위제 2 동	장위제 3 동
인 영				
공인명	석판제 1 동	석판제 2 동		

○ 강서구공고제 4 호

공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배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정제 1 동장의 인 및 제인, 가양동장의 인 및 제인, 신월제 3 동장의 인 및 제인을 개작하였기 동조배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 사용개시일 : 82.2.1 09:00
2. 공인명 : 신정제 1 동장의 인 및 제인
가양동장의 인 및 제인
신월제 3 동장의 인 및 제인
3. 공인의 인영 : 아래

1982.1.16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 영	 	 	 
공인명	신정제 1 동장의 직인 및 제인	가양동장의 직인 및 제인	신월제 3 동장의 직인 및 제인

○ 강남구공고제 3 호

공인개작사용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배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작사용 승인하였기 동조배 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2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1. 개작사용개시일 : 1982.2.1
2. 공인개작동 : 압구정동
3. 공인인영

인 영	 
공인명	압구정동장의직인및제인

사 령

○ 1982년 1월 19일자 령제 16호

강남구대치1동
지방행정주사 김봉환

의약과

강남병원
지방행정서기 윤한일

의약과

북지과
지방행정주사 김진일

근로자회관

언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석

기획담당관

새마을문화회관
지방행정주사 이인웅

공보관실 파견근무를 명함. (82.1.19-82.7.18)

지 하 철 김 상 곤
지방행정주사

지하철도과 파견근무를 명함. (82.1.19-82.7.18)

서울특별시장

령제 17호

인 로 과 최 영 진
서 기 관

국가공무원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거 81.12.12자 당연퇴직

○ 1982년 1월 18일자 령제 18호

영등포구건설관리과장 김진홍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사회정화위원회 제 3부 근무를 명함.

마포구사회복지과장 구본영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사회정화위원회 제 3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 1982년 1월 22일자 명제 19호

용산구보건소 이 재 훈
지방행정주사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위 81-3
(82.1.16)에 의거 인사 272.2
3834(81.8.28)의 전책처분을 동일
자로 취소함.

명제 20호

부녀청소년과 이 종 애
지방행정주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82년 1월 23일자 명제 21호

관악구건설관리과 김 찬 수
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민방위과 박 철 규
지방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산업과 정 우 경
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도시정비과 이 사 영
지방행정주사

행정주사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재무과 정 하 중
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산업과 장 만 수
지방행정주사

해정주사보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